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2026. 3.

 로템에스알에스(주)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 SRS-경관-002
		개정 번호 : Rev.01
		쪽 번호 : 1/24

목 차

제1장	용역의 개요 -----	2
	1. 목적-----	2
	2. 용역의 개요-----	2
	3. 계약기간-----	2
	4. 과업대상-----	2
	5. 과업수행 인원-----	2
	6. 과업의 범위-----	2
	7. 관계법령 및 내규-----	2-3
제2장	용역 수행 방법 -----	3
	1. 일반사항-----	3
	2. 용역 착수 및 시행-----	3
	3. 과업대상-----	3-5
	4. 현장대리인 지정 및 임무-----	5
	5. 과업내용-----	5-7
	6. 특수조건-----	7
	7. 계약내용의 변경-----	7
	8.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8
	9. 대가지급-----	8
	10. 결원의 총원-----	8
	11. 안전사고 및 배상 책임-----	8
	12. 이의의 해석-----	9
	13. 보안관련-----	9
	14. 조문의 해석-----	9
	15. 소송의 관할 법원-----	9
	16. 문서 등 귀속-----	9
	17. 안전관리-----	9
제3장	예정공정표 -----	10
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 -----	11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문서번호 : SRS-경관-002
	<h1>과업내용서</h1>	개정번호 : Rev.01
		쪽 번호 : 2/24

제1장 용역의 개요

1. 목적

- 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림선 도시철도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용역의 개요

- 2.1 용역명 :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 2.2 계약자 : 로템에스알에스 주식회사(이하 “갑”)
- 2.3 과업내용 :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3. 계약기간

- 3.1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4. 과업대상

- 4.1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른 구조물·궤도시설·건축물
 - 1) 구조물 : 터널 (총연장 L=7.76km 및 부대시설)
 - 2) 건축물 : 역사 (11개소 : 셋강역~관악산역), 역사 외 건축물 (2개소 : 종합관제동, 차량기지)
 - 3) 궤도 : 본선 (L=15.5km), 차량기지 (L=1.34km) 외 부속설비

5. 과업수행 인원

- 5.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총괄책임자는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6. 과업의 범위

- 6.1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 6.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른 자체 위원회 구성시 구성인력 지원
- 6.3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표3], [별표4]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를 위한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 작성

7. 관계법령 및 내규

- 7.1 당사가 제시한 과업내용서에 따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SRS-경관-002
		개정번호: Rev.01
		쪽번호: 3/24

- 7.2 당사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7.3 본 과업내용서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철도안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한다.

제2장 용역 수행 방법

1. 일반사항

- 1.1 본 과업내용서는 로템에스알에스(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계약된 용역 범위 내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다.
- 1.2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용역 착수 및 시행

- 2.1 “을”은 본 계약업무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된 법령 및 “갑”의 규정을 준용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2.2 “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용역추진계획서
 - 2) 용역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인력투입계획은 주요과업별 및 세부내용별로 작성)
 - 3) 현장대리인(총괄책임자) 선임신고서
 -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5) 보안각서(“을” 및 “을”의 근로자)
 - 6) 예정공정표
- ※ 자유양식 활용

3. 과업대상

3.1 역사 및 부대 시설 주소

구분	지번주소	도로주소
셋강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166(여의도동)
대방역	영등포구 신길동 1375-1번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신길동)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 SRS-경관-002
		개정 번호 : Rev.01
		쪽 번호 : 4/24

구분	지번주소	도로주소
서울지방병무청역	동작구 대방동 466-41번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지하218(대방동)
보라매역	동작구 대방동 466-49번지	동작구 상도로 지하2(대방동)
보라매공원역	동작구 신대방동 722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지하11(신대방동)
보라매병원역	동작구 신대방동 425	동작구 보라매로5길 지하24(신대방동)
당곡역	관악구 봉천동 985	동작구 보라매로6(봉천동)
신림역	관악구 신림동 1467-10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1614(신림동)
서원역	관악구 신림동 808-407	관악구 신림로 258(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관악구 신림동 110-10	관악구 신림로 144(신림동)
관악산역	관악구 신림동 211-10	관악구 신림로 23(신림동)
종합관제동	동작구 신대방동 722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73
차량기지	동작구 신대방동 722	동작구 여의대방로20마길 35

3.2 설비 현황

구분	대 상 설 비	
구조물	1. 터널	1종
	2. 여객통로	역사 내 보도육교
궤도시설	1. 도상	콘크리트도상
	2. 레일	레일(안내레일)
	3. 분기기	상하식분기기, 수평식분기기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 SRS-경관-002
		개정 번호 : Rev.01
		쪽 번호 : 5/24

구분	대 상 설 비	
건축물	1. 역사	역사, 기계 및 부대설비, 소방설비, 냉난방 및 환기설비, 승강설비, 승강장 안전문
	2. 역사외 건축물	종합관제동, 차량기지 (기계 및 부대설비, 소방설비, 냉난방 및 환기설비)

* 조사 및 계획 수립에 따라 대상설비가 변경될 수 있음

4. 현장대리인 지정 및 임무

- 4.1 “을”은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담당할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과업에 대한 총괄관리 및 책임
 - 2)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계획 및 유지관리
 - 3) 본 계약 업무 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 연락 및 조정
- 4.2 “을”은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기존의 현장대리인 해임 및 신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 4.3 현장대리인이 업무수행 중 아래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갑"은 “을”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히 요구에 임해야 한다.
- 1) 현장대리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현장대리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 3)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 4)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계약기간을 경과하고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5) 현장대리인으로 인하여 보안, 안전 유지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할 때
 - 6) 기타 현장대리인이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과업내용

- 5.1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구조물·궤도시설·건축물 각 분야에 해당하는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자체 위원회 구성, 성능평가를 위한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 (대상물량 및 용역금액 산정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5.2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1) 철도시설 성능평가 대상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 SRS-경관-002
		개정 번호 : Rev.01
		쪽 번호 : 6/24

- 2) 철도시설 성능평가실시자 및 세부일정
 - 3) 철도시설 성능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신림선 도시철도 설비특성을 고려한 지침 마련)
 - 4)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 5)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 6)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3 자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성능평가 방법, 대상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자체심의위원회 회의시 “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각 분야의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를 포함한 인력을 구성하여 회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 2)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정밀진단 결과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성능평가용역 대상물량과 용역대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안전조치,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자체심의위원회는 시행시, ‘을’은 자체심의위원회 인력구성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구성인력에 대한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갑”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인력구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5) “을”은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관련자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고 서명된 회의록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5.4 또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표3], [별표4]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를 위해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른 구조물·궤도시설·건축물 각 분야의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및 인원
 - 2) 성능평가 예정공정표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SRS-경관-002
		개정번호: Rev.01
		쪽번호: 7/24

- 3) 철도시설 성능평가 적정 용역대가 산정
- 4) 과업기간, 과업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성능평가 실시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6. 특수조건

- 6.1 본 과업지시서 5.4 항의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주무관청 협상시 참여
- 6.2 실시계획서 수립 후 변경사항 발생시 적극 협조

7. 계약내용의 변경

- 7.1 다음의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 2) “갑”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3) “갑”의 계획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4) 기타 “을”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8.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8.1 “을”은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월간 진도보고서(매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를 감독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8.2 현장대리인은 보고서 제출 전 성과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8.3 과업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성능평가 수행을 위한 대상 물량 및 용역 대가기준을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8.4 “을”은 용역성과물(안)을 과업준공 10일 전에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8.5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 불충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 부담으로 지체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갑”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8.6 “을”은 수행한 과업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전에 제시된 의견의 보완사항 및 결과물에 대하여 최종 설명하여야 한다.
- 8.7 “을”은 과업완료시 다음과 같이 용역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성능평가 실시계획서, 자체 심의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실시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 각 5부.
 - 2) 용역성과물 및 관련 자료 수록 USB 5개[한글(HWP) 및 PDF 파일]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SRS-경관-002
		개정번호: Rev.01
		쪽번호: 8/24

- 3) “을”의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 보고서, 용역결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 4) “을”은 용역에 인용된 모든 자료의 출처를 보고서에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9. 대가지급

- 9.1 “을”은 용역을 완료한 후 제8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9.2 “갑”은 지급 청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당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 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 기한 내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9.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9.4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9.5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와 같다.
 - 1) “갑”은 착수 후 30일 이내 계약금의 20%를 “을”에게 지급
 - 2) “갑”은 준공 후 30일 이내 계약금의 80%를 “을”에게 지급
 ※ 지급시기는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0. 결원의 충원

- 10.1 “을”은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을”은 사전에 결원현황 및 충원계획을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10.2 결원 발생 시 부득이하게 업체 사정에 의하여 인원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인원 충원 시 까지 “갑”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11. 안전사고 및 배상 책임

- 11.1 “을”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가 필요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 11.2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실비변상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 SRS-경관-002
		개정 번호 : Rev.01
		쪽 번호 : 9/24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2. 이의의 해석

12.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내규에 따르며,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 및 관습에 의한 해석에 따른다.

13. 보안관련

13.1 "을"은 "갑"의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증명서류 비치 및 "갑"이 추가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조문의 해석

14.1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사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15. 소송의 관할 법원

15.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이 속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16. 문서 등 귀속

16.1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수령한 일지, 도면, 문서, 기술자료 등 일체의 자료는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을"은 승객 및 대중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갑"의 규정, 내규, 지침,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7.2 "을"의 현장대리인은 현장확인 시 용역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선로를 출입 시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17.3 "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전 "을"의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SRS-경관-002

개정번호: Rev.01

쪽 번호: 10/24

제3장 예정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공 중	수 량		용역기간 (월)				비고
			1	2	3	4	
1.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 중인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점검 데이터 수집 및 성능평가 활용 가능여부 분석	식	1	■				
2. 신림선 도시철도의 10년 미만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표 수행에 대한 평가물량, 평가방법, 관리지표 마련	식	1	■				
3. 신림선 도시철도의 10년 미만 시설물의 데이터 활용한 성능평가 용역 대가기준, 사업수행 능력평가 마련 및 제출	식	1		■			
4. 신림선 도시철도의 10년 미만 시설물의 데이터 활용 성능평가 시행 평가기법 세부지침(안) 마련 및 제출	식	1		■			
5. 성능평가 관련 법령, 지침 등 제·개정 의견 제시, 자문회의	식	1				■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SRS-경관-002
		개정 번호: Rev.01
		쪽 번호: 11/24

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 가. 제안자는 로템에스알에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 제안자는 로템에스알에스에서 제시한 제안요청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안요청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사항 외의 제안 과업에 대하여는 제안사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다.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적용 기준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라. 제안내용은 정량적, 확정적 표현을 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심사 시 수행 불가로 판단하여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마. 제안서 작성시 평가항목의 누락·판단불가·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됩니다.
- 바. 제안서 표지와 본문 내용에 있어서는 기술제안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에 불이익(-3점)을 받습니다.
- 사.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로템에스알에스의 승인을 얻은 후 당초 참여연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급기관의 증명(인허가)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로템에스알에스는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당사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 SRS-경관-002
		개정 번호 : Rev.01
		쪽 번호 : 12/24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가. 기술제안서는 과업내용서에 첨부되는 기술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필요시 영문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영문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 풀이를 해당 페이지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통화는 원화를 기본으로 외화를 표시하는 경우 작성 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병기합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용지규격은 A4 규격(세로)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분량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서 표지, 목차, 그림목록, 각 장의 구분은 분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목차를 참조 후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바. 모든 페이지에는 쪽 번호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 로템에스알에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기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입찰공고문의 준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술제안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구분	내 용	비 고
1	표지	제안서 표지	겉표지 참조
2	사업책임 기술인	1) 기술등급 2) 최근 5년간 성능평가용역 수행실적	
3	제안회사	1) 최근 5년간 성능평가용역 수행실적 2) 재정상태 건실도	
4	제안서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 SRS-경관-002
		개정 번호 : Rev.01
		쪽 번호 : 13/24

순서	구분	내 용	비 고
5	과업접근방법	1) 용역 수행을 위한 전략 및 접근방법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	
6	수행계획	1) 단계별 추진전략 2) 조직 및 인력투입 3) 공정관리 4) 차별화된 방법론 제시 5) 과업 특화 기술 제안 6) 품질관리	
7	사후관리계획	1) 용역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	
	별첨	1) 참여업체의 용역실적 증명원 2) 최근년도(3년) 재무상태 경영보고서 및 신용도(발주처 협약에 의해 대체 증빙 제출 가능) 3) 기타 증빙문서 일체	

3.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작성지침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자체양식으로 작성, 제안가격과 함께 밀봉하여 계약부서에 제출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1)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2) 제출된 제안서는 로템에스알에스의 승인 없이는 수정·추가·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3)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과업 또는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창의적 의견은 제안서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에 제시된 사항은 수행사의 책임이며 본 과업으로 수행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 SRS-경관-002
		개정 번호 : Rev.01
		쪽 번호 : 14/24

하여야 합니다.

- 4)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5)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유의사항

- 1) 제안자는 본 “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작성지침에 위배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입찰참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2) 로템에스알에스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반 자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3)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출과 동시에 로템에스알에스의 자산이 되며, 로템에스알에스는 제안서 평가 및 사업추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 목적으로 로템에스알에스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권리를 갖습니다.
- 4)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은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5)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6)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7) 증명서(확인서)의 특성 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8) 제출한 제안서는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을 수주하여 용역사업자가 획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로템에스알에스의 서면 승인 없이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 9)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로템에스알에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10) 로템에스알에스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제출부수

- 1)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각 1부)
- 2) 기술제안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 번호 : SRS-경관-002
		개정 번호 : Rev.01
		쪽 번호 : 15/24

- * 원본 기술제안서에 법인 인감 날인
 - * 기술제안서 작성 후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 후 파일로 제출
- 3)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1부(원본 1부)

나. 첨부서류

- 1)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 ※ 자체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문료 포함
- 2) 실적증명서(발주기관 必) 1부.
- 3)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1부.
- 4) 사업자 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부.
- 5) 법인 등기부등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원본) 1부.
- 6) 법인 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원본) 1부.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1부.
-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붙임 참조)
- 9) 기타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다. 제안 관련 문의처

- 1) 계약 : 경영관리처(02-890-2246)
- 2) 제안서 및 과업내용 : 기술처(02-890-2252,2253). 끝.

[붙임]

구비서류 명세서식

- | | | |
|------------------|---|----------|
| 1. 서약서 | : | 별지 1호 서식 |
| 2. 기술제안서 표지 | : | 별지 2호 서식 |
| 3. 신청회사 일반 현황 | : | 별지 3호 서식 |
| 4. 용역참여자 자격 및 경력 | : | 별지 4호 서식 |
| 5. 용역참여자 이력사항 | : | 별지 5호 서식 |
| 6. 용역 수행실적 | : | 별지 6호 서식 |
| 7. 신용도 | : | 별지 7호 서식 |

제안서 평가 서약서

용역명 : 신림선 도시철도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용역

상기 용역의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 시 성실히 작성하며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입찰참가 대상 제외 등 관련 조치를 따를 것입니다.
-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제안한 용역참여 예정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할 것이며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귀 로템에스알에스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관련 조치를 따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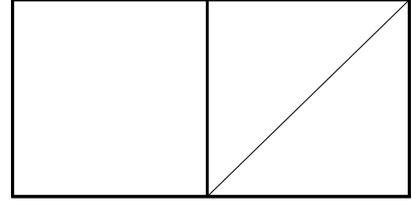
20 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 등록번호 :
 상 호 및 대표자 :
 주 소 :

인

로템에스알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서식 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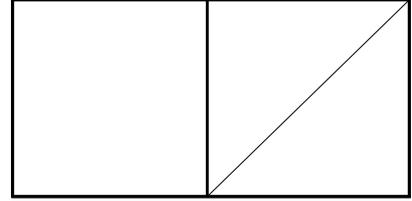
기 술 제 안 서

[원본]

사업명 :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업체명 : _____ (인)

[별지 서식 2-2호]



기 술 제 안 서

[부분]

사업명 : 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업체명 : _____ (인)

[별지 서식 3호]

신청회사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등 록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TEL :	FAX :	
설 립 년 도	년 월		

구 분	계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인적구성(명)					

재정상황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2023년	2024년	2025년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 요 연 혁						
주요실적내용						

※ 작성방법

- 참여 업체 모두 기재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분야별 인원표시
- 주요 실적은 본 과업과 유사분야 이상 실적만 표기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용역참여자 자격 및 경력(총괄표)

총괄책임자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분야별책임자(구조물)	분야별책임자(궤도시설)	분야별책임자(역사시설)
자격(학력)	자격(학력)	자격(학력)
성 명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기술등급	기술등급	기술등급
경력	경력	경력

- ※ 1. 구분 란에는 참여 분야를 기재
 2.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 인력의 실적을 기재, 참여 경력 건은 본 용역과 유사한 분야 이상의 실적 건수(용역별 수행기간이 3개월 이상)만 기재
 3. 계약 체결 후 과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하여 변경 시에는 로템에스알에스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4. 총괄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 1개를 겸임할 수 있음

[별지 서식 5호]

용역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 격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자격: (박사, 기술사 등)			학 위			
주요경력							
참 여 실 적							
용 역 명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최근 5년간 동등 이상, 유사용역만 기재 (용역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만 해당)							

※ 유의사항

-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용역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량)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준공금액 (천원)	해당회사 참여금액 및 비율 (천원/%)	발주처	비고
계							

<작성요령 등>

- ①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선로 및 건축시설 정밀 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수행에 한하며, 현재 참여 중인 용역은 제외
- ② 용역구분란에는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 용역사업 등을 표기
- ③ 용역사업수행실적은 발주자의 확인과 용역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으로 하되, 최종 준공 금액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회사 참여금액란에는 준공금액 중 참여금액 및 참여지분율을 기재 한다.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 도급 내용 필히 기재, 계약서 사본 첨부)
- ④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해당없음”을 표시한다.
 ※ 용역실적은 해당용역 발주처의 실적확인 증명서 제출

[별지 서식 7호]

신 용 도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평가기준일	비고

※ 첨부서류

1. 신용평가기관(유의서 참조)에서 발행한 신용등급 자료